

2023. 08. 29.(화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8월 28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

보도자료

담당부서 :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

주택정책과장

공병엽

2133-7010

청년주거안심팀장

이영희

2133-7701

사진없음

사진있음

쪽수 : 5쪽

관련 홈페이지

housing.seoul.go.kr
(서울주거포털)

서울시, 월20만원씩 12개월지원 '청년월세' 2차 추가모집... 9.5(화)부터 신청

- 서울시, 보다 많은 청년들에게 주거안정 제공하기 위해 추가모집하기로 결정
- 상반기 21,757명 선정에 이어, 9.5(화)~9.18(월) '청년월세지원' 3,500명 추가모집...
-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신청종료로 신청 기회 놓친 청년도 참여 가능
- 올해부터 기존 최대 10개월간 지원에서 2개월 연장하여 최대 12개월로 확대지원

서울시는 높은 주거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들에게 최대 월 20만원씩, 12개월 동안 월세를 지원하는 '청년월세 지원'의 2차 추가모집 신청을 9.5(화) 10시~9.18(월) 18시, 2주간 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을 통해 접수 받는다.

○ 시는 보다 더 실질적인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월세 지원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의견과 청년들의 요구에 따라 올해부터 월세 지원 기간을 기존 10개월에서 2개월 더 연장하여 12개월 지원하고 있다.

앞서 서울시는 지난 5~6월, 1차 신청자를 모집하여 21,757명을 선정하였다. 이번 2차 추가 모집은 기존 1차 모집과 동일하게 서울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9~39세(주민등록등본상 출생연도 1983~

2004년)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를 신청대상으로 하며, 3,500명을 선정·지원할 계획이다.

- 주민등록등본 상 만 19~39세 이하인 형제·자매 또는 동거인이 있는 경우도 지원 가능하며 주민등록 상 2인 가구로 '셰어하우스' 등에 함께 거주하며 임대사업자와 각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개인별로 신청할 수 있다.
- 기준중위소득은 신청인이 속한 가구의 2023년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하며, 신청인의 건강보험이 피부양자(건강보험 상 부모 등의 세대원으로 소속)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은 분리되어 있어도 '부양자'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.

〈2023년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건강보험료 부과액〉
 - 직장가입자 111,677원, 지역가입자 50,654원 ※ '23년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참고

□ 서울시 사업은 만19세~34세,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청년만이 지원 가능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에 비해 만19세~39세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의 청년도 지원할 수 있어 보다 광범위한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다. 따라서 지난 8.21.(월)로 신청이 종료된 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신청 기회를 놓치거나 나이나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선정되지 못했던 청년이라도 과거 본 사업으로 지원받은 바가 없다면 지원할 수 있다.

	서울시 청년 월세 지원	정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
지원대상	만19~39세	만19~34세
소득요건	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	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
신청방법	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	복지로포털 온라인 또는 동주민센터
예산보조율	시비 100%	국비 30% 시비 70% 매칭

- 소득요건 외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, 일반 재산(토지 및 건축물 과세표준액, 차량시가표준액, 임차보증금 해당) 1억 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
- 월세 60만원 초과자 중에서 보증금 월세 환산액(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환산율 5.25% 적용)과 월세액을 합산해 '81만원 이하'인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다.

예시) 보증금 4천만원, 월세 62만원의 경우 **총 79만원**으로 신청 가능

⇒ 보증금 월세 환산액 17만원(4천만원 × 5.25% ÷ 12개월) + 월세 62만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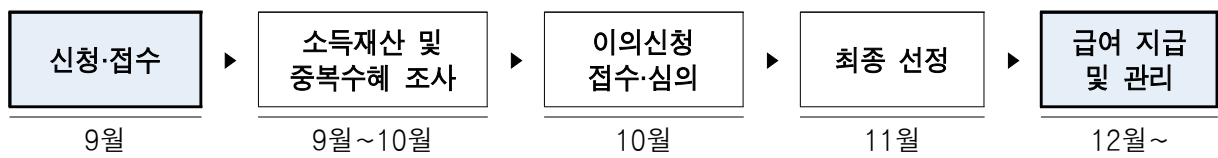
※ 천원 단위 절사

- 주택 소유자(분양권·조합원 입주권 보유자 포함), 차량시가표준액 2,500만원 이상의 차량 소유자, 공공임대주택 거주 청년 등은 제외되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서울시 및 정부 청년월세 기수혜자, 은평형 청년월세,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다.
- 청년월세를 신청할 때에는 ▲임대차계약서 ▲월세이체증(월세 납부 확인서) ▲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, 그밖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주거포털 내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.
- 청년월세 관련 문의는 서울주거포털 1:1 온라인 상담창구, 120 다산콜센터, 서울주택도시공사 청년월세지원센터(☎1833-2030)로 연락하면 된다.
- 서울시는 월세·임차보증금 및 소득을 기준으로 '4개 구간'으로 나눠 청년월세 대상자를 선발, 신청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.
- 시는 실질적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느끼는 저소득 청년의 어려움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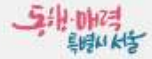
덜어주기 위해 임차보증금과 월세가 낮은 구간(보증금 1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)에 많은 인원을 배정(75%, 2,625명)하여 지원할 예정

구간	임차보증금 및 월세액	소득기준	선정인원(명)
1	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이고, 월세 40만원 이하	120%이하	1,575
2	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50만원 이하	120%이하	1,050
3	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	120%이하	525
4	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이고, 월세 60만원 이하	150%이하	350
	※ 월세 60만원 초과 시에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81만원 이하인 경우 신청 가능 (이 경우에도 임차보증금은 5천만원 이하이어야 함).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거 환산율은 5.25%를 적용.		

- 서울시는 소득재산 기준, 자격요건 적절성 여부 등 조사를 거쳐 11월 중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·발표할 예정이며, 오는 12월 말부터 격월로 월세를 지원한다. 단, 1회차 지원분은 심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4개월 분을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.
- 청년월세 신청자는 서울주거포털 '마이페이지'를 통해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으며, 선정 후 주소 등 변동이 발생하면 변경 신청해야 한다.



-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“청년월세지원의 이번 2차추가 모집이 1차 모집시기 이후에 월세거주를 시작한 청년들과 아쉽게 1차 모집 신청을 놓쳤던 청년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단비가 되어주길 바란다”며 “앞으로도 월세지원이 주거여건이 취약한 청년들에게 장기적인 주거안정을 위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”고 말했다.



2023

서울시
청년월세지원
2차 추가모집

신청접수 2023.9.5.(화) ~ 9.18.(월) 마감
서울주거포털(housing.seoul.go.kr)
온라인 신청

지원대상 서울시 거주 만 19세~39세 청년 1인가구,
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

지원내용 월 20만원 지원 (최대 12개월 / 240만원)

관련문의 청년월세지원센터 1833-2030
다산콜센터 02-120
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



서울주거포털